

---

2017년 하반기  
달라지는 관세 행정

---

2017. 7.



관세청  
KOREA CUSTOMS  
SERVICE



# 목 차

①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제도 도입	p.1
②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	p.2
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방법 명확화	p.3
④ 임시개청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 납부절차 개선	p.4
⑤ 소액채납자에 대한 월별납부요건 완화	p.5
⑥ 중국산 에이치 형강 덩팡방지관세 부과 제외 추가	p.6
⑦ 산업기술 연구·개발용 물품 감면 대상 조정	p.7
⑧ 특송화물에 대한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	p.8
⑨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로 수출지원	p.9
⑩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신규 지정 및 재지정	p.10
⑪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전산화	p.11
⑫ 종합보세구역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신청서 서식 개정	p.12
⑬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	p.13
⑭ 한-칠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변경	p.14
⑮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	p.15
⑯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상향조정	p.16
⑰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	p.17
⑱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 추진	p.18
⑲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(Help-Desk) 상담서비스 개선	p.19
⑳ 한-호주, 한-UAE AEO MRA 체결	p.20



# 1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제도 도입

(법인심사과 042-481-785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은 잠정 가격신고 대상 아님	<input type="checkbox"/> <u>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을 잠정 가격신고 대상으로 규정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후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 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*을 갖춘 경우</li> </ul> *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

- ( 기대효과 ) 다국적기업에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국내투  
자를 활성화하고,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
- ( 시행일 ) '17. 7. 1.(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6조,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3  
조, 「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」 제48조 및 제51  
조 개정)

## 2 일자리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

(법인심사과 042-481-798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 유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<u>50%</u> 이상 기업</li> <li>● 수입규모별 <u>4~10%</u>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 기업</li> </ul>	<p>□ <u>관세조사 유예요건 완화로 관세조사 유예 확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<u>20%</u> 이상 기업</li> <li>● 수입규모별 <u>2~4%</u> 이상 일자리창출 예정 기업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문제 완화 및 경제 활력 제고

○ ( 시행일 ) '17년 7월

(※기업의 신청을 받아 요건 검토 후 관세조사 유예 기업 선정)

### 3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방법 명확화

(법인심사과 042-481-785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 불명확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방법 명확화 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<u>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규정</u>

○ ( 기대효과 ) 민원인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업무 방지

○ ( 시행일 ) '17. 7. 1.( 「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」 제51조의3)

#### 4 임시개청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 납부절차 개선

(심사정책과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개청·파출검사 수수료 • (발행주기) <u>매일</u> • (납부기한) <u>발행일의 다음 날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시개청·파출검사 수수료 • (발행주기) <u>월 1회 통합발행</u> • (납부기한) <u>발행일로부터 15일</u>

○ ( 기대효과 )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 제고

○ ( 시행일 ) '17. 7. 17.( 「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」 제8조)

(※'17. 7. 19. 이후 발행될 고지서부터 적용)

## 5 소액채납자에 대한 월별납부요건 완화

(심사정책과 042-481-775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월별납부 승인 배제요건 • <u>채납액 규모 관계없이</u> 월별납부 배제	<input type="checkbox"/> <u>월별납부 승인 배제요건 완화</u> • <u>채납액 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월별납부 배제요건에서 제외</u>

○ ( 기대효과 ) 약 5천여 소액 채납업체의 월별납부 이용(연간 약 9,000 억원)시, 이자비용 40억원 절감

○ ( 시행일 ) '17. 6. 15.(「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조)

## 6 중국산 에이치 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추가

(세원심사과 042-481-773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중국산 에이치(H)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」 - 별표 1 제6호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6. 진시스틸(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., Ltd.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. Jinxi International Trade Co., Ltd. 나.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다. China Oriental Singapore Pte. Ltd. 라.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., Ltd.</p> </div>	<p>□ 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 제외 공급자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중국산 에이치(H)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」 - 별표 1 제6호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6. 진시스틸(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., Ltd.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., Ltd.) 및 오리엔탈 티앤중(Tianjin Oriental Tianzhong Giant Heavy Profile Steel Sales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가. Jinxi International Trade Co., Ltd. 나. China Oriental Group Company Limited 다. China Oriental Singapore Pte. Ltd. 라. Tianjin Hainajin International Trade Co., Ltd.</p> </div>

○ ( 기대효과 ) 중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 중 가격수정을 약속한 업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대상업체로 등록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유도

○ ( 시행일 ) '17. 7. 19.( 「중국산 에이치(H)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」 개정)

## 7 산업기술 연구·개발용 물품 감면 대상 조정

(통관기획과 042-481-781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134개</u> 품목 운영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대상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133개</u> 품목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제외) 차량 중량 측정기기, 스크린 프린터,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<u>36개</u> 품목</li> <li>- (추가) 전기스팀 보일러, 온도습도 시험기, 증기흡착 분석기 등 <u>35개</u> 품목</li> </ul> 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

○ ( 시행일 ) '17. 7. 19.(「관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1 개정)

## 8 특송화물에 대한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

(특수통관과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신 규>	<input type="checkbox"/> 스마트 통관심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,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을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 및 수리</u></li> <li>※ <u>일정 시간 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자동수리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인한 특송화물 처리 지연 해소

○ ( 시행일 ) '17. 7. 24.(시범 운영 : 특송센터 입주 4개 업체)

※ 확대 실시 예정('17년 10월 잠정)

'17. 7. 1.(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)

## 9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로 수출지원

(통관기획과 042-481-780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상태수출시 수입내역 증빙 • 원상태 수출시 수입한 때 납부한 관세 등 증명 -수출신고서 항목④에 수입신고번호 등 기재	<input type="checkbox"/> 원상태수출 절차 간소화 • 성실 수출기업에 원상태 수출신고시 납부한 관세 등 증명 생략 -수출신고서 항목④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서 등 수입관련 증빙 내역 기재 생략 가능

○ ( 기대효과 ) 성실 수출기업의 원상태수출시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지원

○ ( 시행일 ) '17년 하반기(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예정)

## 10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신규 지정 및 재지정

(통관기획과 042-481-781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식염, 천일염(비식용), 대두유(비식용), 복어(금밀복), 천일염(식용), 가리비, 돔, 냉동고추, 뱀장어, 냉동옥돔, 냉동조기, 냉동고등어, 냉동갈치, 미꾸라지, <u>보리</u>, <u>인삼제품</u>, <u>홍삼</u>, <u>팥</u>, <u>황기(식품용)</u>, <u>당귀(식품용)</u>, <u>지황(식품용)</u>, <u>천궁(식품용)</u>, <u>작약(식품용)</u>, <u>황금(식품용)</u>, 냉동꽃게, 콩(대두), 참깨분, 참깨분, 땅콩, 도라지, 염장새우, 냉장명태, 건고추, 향어, 활낙지, 사탕무당(설탕), 냉동꽂치, 김치</li> </ul>	<p>□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 38개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천일염(비식용), 대두유(비식용), 복어(금밀복), 천일염(식용), 가리비, 돔, 냉동고추, 뱀장어, 냉동옥돔, 냉동조기, 냉동고등어, 냉동갈치, 미꾸라지, 팥, 황기(식품용), 당귀(식품용), 지황(식품용), 천궁(식품용), 작약(식품용), 황금(식품용), 냉동꽃게, 콩(대두), 참깨분, 참깨분, 땅콩, 도라지, 염장새우, 냉장명태, 건고추, 향어, 활낙지, 사탕무당(설탕), 냉동꽂치, 김치, <u>냉장갈치</u>, <u>냉동멸치</u>, <u>냉동기름치</u>, <u>냉동기름치</u>, <u>꽃가루</u></li> <li>- (재지정) <u>냉동조기</u>, <u>냉동고등어</u>, <u>냉동갈치</u>, <u>미꾸라지</u></li> <li>- (신규) <u>냉장갈치</u>, <u>냉동멸치</u>, <u>냉동기름치</u>, <u>꽃가루</u></li> <li>- (삭제) 식염, 보리, 인삼제품, 홍삼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,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

○ ( 시행일 ) '17. 8. 1.( 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1 개정)

품목		지정기간
재지정	냉동조기	2017.8.1 ~ 2018.7.31
	냉동고등어	
	냉동갈치	
	미꾸라지	
신규지정	냉장갈치	2017.10.1 ~ 2019.1.31
	냉동멸치	
	냉동기름치	
	꽃가루	

## 11 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전산화

(수출입물류과 042-481-782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수단 신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세운송신고필증에 <u>수기기록</u> 및 상호 교환·보관</li> </ul> <p>*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 별지서식 제9호, 제12호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세운송수단 신고 전산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세운송수단정보(차량번호)를 화물 반출 전까지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으로 전송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보세운송수단 신고를 전산화하여 해당 서류 교환절차 및 보관의무 완화

○ ( 시행일 ) '17. 8월(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 제26조, 제32조 개정 및 별지서식 제9-2호 신설 예정)

## 12 종합보세구역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신청서 서식 개정

(수출입물류과 042-481-782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신고전 물품확인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
○ ( 기대효과 ) 개인정보 보호 강화

○ ( 시행일 ) '17. 10월( 「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 예정)

### 13 세관장확인대상 전자심사제 도입

(통관기획과 042-481-789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확인 수작업심사 •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신고서류 심사 시 수출입요건을 수작업으로 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요건확인 전자심사제 도입 • 수출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자적으로 상호대사하여 수출입 요건 심사

- ( 기대효과 ) 신속·정확한 요건확인으로 신속통관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지원
- ( 시행일 ) '17. 10월(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」 제9조 개정 예정)

14 한-칠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변경

(FTA집행기획 042-481-320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칠레 FTA C/O 작성시 HS기준 • HS 2007 기준으로 C/O 5번란(HS코드) 및 6번란(Preference Criterion) 작성	<input type="checkbox"/> 한-칠레 FTA C/O 작성시 HS기준 • HS 2012 기준으로 C/O 5번란(HS코드) 및 6번란(Preference Criterion) 작성

- ( 기대효과 ) HS 2012기준에 따른 C/O작성으로 수출자의 편의제고
- ( 시행일 ) '17. 7. 1.( 「한-칠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4(원산지규정) 개정 교환각서」 발효)

15 협정관세 사후적용시 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

(FTA집행기획 042-481-320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증빙자료* <u>서면제출</u> * 납세신고정정신청(경정청구)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증빙자료 <u>전자제출</u>

- ( 기대효과 ) 신속한 협정관세 적용으로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비용 절감
- ( 시행일 ) '17. 10월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예정)

## 16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

(외환조사과 042-481-793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: <u>최대 5천만원</u></li> <li>-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천만원(법§32 ①) 또는 1천만원(법§32조 ②)</li> <li>● 과태료 감경사유*에 해당되는 경우 <u>감경율을 20%로 규정</u></li> </ul> <p>* 자진신고, 중소기업(1회 감경으로 한정), 기타 경미한 과실 등</p>	<p>□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<u>상향조정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: <u>최대 1억원</u></li> <li>-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<u>1억원(법§32 ①), 5천만원(법§32 ②), 3천만원(법§32 ③), 1천만원(법§32 ④)*</u>으로 세분화 및 <u>상향조정</u></li> <li>● 과태료 감경사유*에 해당되는 경우 <u>감경율을 50%로 확대 및 과태료 금액의 최대 75%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</u></li> </ul> <p>* 자진신고, 중소기업, 기타 경미한 과실 등</p>

○ ( 기대효과 )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상향조정으로 수출입 기업의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

○ ( 시행일 ) '17. 7. 18( 「외국환거래법」 제32조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별표4 개정)

## 17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

(외환조사과 042-481-7938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<u>각각 과태료 부과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0만원(또는 100만원)과 위반금액의 1%(2%)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(예시) 법 16조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없이 지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1천만원씩 6회 위반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%중 큰 금액을 부과로 총 <u>6백만원(100만원X6)</u> 부과</li> </ul> </li> <li>● 1천만원씩 4회 위반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%중 큰 금액을 부과로 총 <u>4백만원(100만원X4)</u>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수개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반금액의 2%(또는 4%)</li> <li>- 다만,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총 위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<u>과태료 100만원(또는 200만원) 부과</u>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(예시) 법 16조에 따른 한국은행 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없이 지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1천만원씩 6회 위반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위반금액의 4%인 <u>240만원(40만원X6)</u> 부과</li> </ul> </li> <li>● 1천만원씩 4회 위반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천만원 미만(4천만원)으로 <u>200만원</u>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

### ○ ( 기대효과 )

- 불필요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 불복 절차, 체납처분 등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및 과태료 납부 이행을 제고
- 수개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었던 불합리 개선

### ○ ( 시행일 ) '17. 7. 18 (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별표4 제2호 사목~하목 개정)

## 18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 추진

(국제협력팀 042-481-797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신 규>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 통관장벽 타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<u>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체계 구축(▲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, ▲통관애로 해소 지원, ▲제도 및 시스템 개선)</u></li> <li>● <u>중소·중견 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현지 기동팀 파견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\* 적기 해소·통상 지원

\* 해외 통관애로 현황 : 407건('14) → 444건('15) → 461건('16)

○ ( 시행일 ) '17. 9월 ~ 11월(잠정)

## 19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(Help-Desk) 상담서비스 개선

(정보관리과 042-481-775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 상담 서비스(Help-Desk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전산 관련 문의를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(☎1544-1285)에서 응대</li> </ul>	<p>□ Help-Desk 상담창구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(콜백(Call-back) 서비스)</u> 먼저 걸려온 전화 응대로 인해 전화상담 연결이 지연될 경우, 연락처를 남기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 처리</li> <li>• <u>(인터넷) UNI-PASS에</u> 즉문·즉답 가능한 게시판(Q&amp;A) 신설</li> </ul>

### ○ ( 기대효과 )

-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 전화상담 연결 지연\*으로 인한 고객 불편·불만 해소

\* 상담원 전화연결 대기시간 지연(평균 1분 20초)으로 응답포기율(월평균 8~10%) 지속 발생  
(응답포기율 = 통화포기건수 / 총 통화시도건수)

- 전자통관시스템 기술지원센터(Help-Desk) 상담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

### ○ ( 시행일 ) '17년 10월

20 한-호주, 한-UAE AEO MRA 체결

(심사정책과 042-481-7867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14개국</u></li> <li>- 미국, 캐나다, 싱가포르, 일본, 뉴질랜드, 중국, 홍콩, 멕시코, 터키, 이스라엘, 도미니카, 인도, 대만, 태국</li> </ul> <p>&lt;추 가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우리나라 AEO MRA 체결국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16개국</u>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<u>호주, UAE</u></li> </ul>

○ ( 기대효과 ) AEO기업 통관혜택\* 로 호주, UAE 수출 확대 기대

\* (MRA 혜택) 검사율축소, 우선통관, 수입서류 간소화, 비상시 우선조치 등

○ ( 시행일 ) '17. 7. 6. 체결